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84 발의연월일: 2022. 9. 16.

발 의 자:이원욱·강득구·김영주

김주영 · 박광온 · 송옥주

양정숙・양향자・장철민

전용기 • 홍기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중요한 과제임에도 2018년 이후 2022년 9월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8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상당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상봉 재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이산가족 주체들이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상 희망하는 날짜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던 추석 연휴 전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여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념행사와 홍보 등의 실시 및 예산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여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여건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규정된 추석 공휴일의 전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행사 및 홍보에 필요한 예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① 남 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 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 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규정된 추석 공 휴일의 전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 념행사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 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기념행사 및 홍보에 필요 한 예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 다.